

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안이유

-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

주요골자

- 다음의 사회교육시설이 사회교육에 직접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소방공동시설세 면제
 -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
 -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
 -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운수연수원
 -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·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
 -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

근거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
- 사회교육법
- 한국노동교육원법
-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○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전문위원 민귀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
(참 조)